

인천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가단289009 판결 [건물명도 청구 등]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우

피 고 1. 주식회사 D

2. 주식회사 E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퇴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1)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3. 각하 부분

원고들은 그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E가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하여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 청구 외에 퇴거 청구도 구하고 있다.

퇴거는 점유자의 점유를 해제시키는 것에 그침에 반하여 인도는 점유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나아가 점유를 이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점유자의 인도의무에는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퇴거 청구 부분은 위 피고에게 인도의무를 인정하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위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판사 박상훈

별지

1) 소장 청구취지에는 '원고에게'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에게'로 선택한다.